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29
----------	-------

발의연월일 : 2025. 9. 19.

발 의 자 : 서범수 · 김소희 · 김예지
이인선 · 이현승 · 최형두
송석준 · 정성국 · 유용원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0년 12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존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증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고 가산금·증가산금이 폐지(2024.1.1. 시행)되었음. 다만,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시행일 당시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그런데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산금·증가산금을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약 12%로, 개발부담금을 최대 60개월(부과상한) 체납할 경우 원금 대비 3%의 금액이 가산금으로, 45%의 금액이 증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율(연 5%)을 고려하면 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산금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서 1%로 하향하고, 증가산금은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이율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誤記)를 수정함(안 제21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중 “제13699호”를 “제13669호”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생략)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결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	5. ----- ----- ----- ----- -----. ----- ----- ----- ----- ----- <u>제13669호</u> ----- ----- -----

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생 략)

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신 설>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